



장 학 규 정

제 정 일	1978. 3.13
개 정 일	2024. 4. 1
개정차수	32차
담당부서	학생서비스과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3조 (사무관장)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학생처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 제 4조 (설치) 본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 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2.13, 2022. 7. 1)
1.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담당하고 간사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 제 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에 관한 기본방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기준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1)
 4. 장학규정에 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 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 제 8조 (교내장학금) ① 교내 장학금은 본교 재단 및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종류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 가.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4. 1)
 - 나. 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3.00 이상, 취득학점 17학점(학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 2. 1, 2024. 4. 1)
2. 공로장학금
 - 가. 학생자치단체 학생대표, 미디어센터 정기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 10. 1, 2009. 3. 1, 2024. 4. 1)
 - 나. 교내·외 각종 활동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본교의 명예를 선양한 공로가 현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4. 1)
3. 모범장학금
 - 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인 자로서 건전한 학생활동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4. 1)
 - 나.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평소 학부(과)의 공동생활에 적극성을 가지고 성실하며 타에 모범이 되어 학부(과)에 추천받은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0이상인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 4. 1, 2014. 5. 1, 2024. 4. 1)
4. DU가족장학금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재직기간 20년 이상 퇴직 교직원 포함)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 4. 1, 2021. 3. 1, 2022. 7. 1, 2023. 4. 1)
5. 보훈장학금 : 보훈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로 지정된 자 중 직전학기 평균 성적 7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대상자 본인(배우자)은 성적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1, 2024. 4. 1)
6. 복지장학금 : 본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로서 교내 각 학부(과) 및 행정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4. 1)
7. 면학장학금
 - 가. 한국장학재단이 통보한 소득분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계곤란자를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1)
 - 나. 소득분위 관계없이 면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6.12.14., 2024. 4. 1)
8. (삭제 2016. 7. 1)
9. (삭제 2016. 7. 1)
10. 예체능특기자장학금 (개정 2009. 3. 1)
 - 가. 교위를 선양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로서 매 학기 경기실적이 우수하여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 나. 신문·방송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서 재능을 빛냈거나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본교의 명예를 선양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8. 8. 1)
11. 산업체장학금 :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당시 본교와 산업체간의 계약체결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북한이탈주민정착장학금 : 북한 이탈주민 및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실점 평균이 70

접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4. 1)

13. 가족장학금 : 본교에 재학 중인 가족(직계비존속, 형제자매, 부부)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
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8. 4.16, 개정 2024. 4. 1)

14. 글로벌인재장학금 : 재학 중 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TOEIC, TOEFL, TEPS, HSK, JPT,
JLPT 등) 성적 취득자에게 지급하며, 어학 점수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08. 4.16, 개정 2019. 5. 1, 2023. 4. 1)

15.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금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16. DU희망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경증” 또는 “중증” 인 자에게 지
급하며, 직전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 개정 2023. 4. 1)

17. 다문화가정학생장학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지
급한다. (신설 2014. 5. 1, 개정 2024. 4. 1)

18. 특별장학금 (신설 2016. 1. 1)

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나.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 1)

19. 특성화장학금 (신설 2016. 7. 1)

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성화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나. 특성화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7. 1)

20.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장학금

가. 본교에 입학하는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에
게 TOPIK 급수별로 지급한다. (신설 2021. 3. 1)

21. 학생처 추천 장학금 : 학업활동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자로서 학생처의 추천을 받는 자
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2. 7. 1)

22. 학생홍보대사 장학금 : 대학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직전학
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4. 1)

23. 성인학습자 장학금 : 만4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

②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을 시,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50이상으로 한
다. 단, 근로장학금은 제외한다.

제 9조 (교외장학금) ① 교외 장학금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사기업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
학금으로 기탁단체(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
점평균 2.50이상으로 한다.

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전문학사학위과정 최소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최소이수학점 6학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5. 1)

1.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장학금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학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 5. 1)

2. 지역특화 인재 육성 장학금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에 참여하여 장학 대상자로 선발

된 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 5. 1)

[전문개정 2022. 7. 1]

제10조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11조 (지급시안) 매 학년 말 다음 학년의 장학금 지급일정 및 지급시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 2.13)

제12조 (수혜자 선정기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3. 학기별 국가장학금 산정 소득분위 8분위 이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개정 2021. 3. 1)
4.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5. 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보훈자 및 직계자녀
6.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및 직계자녀
7.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9. 2.13)

제13조 (장학생의 배정) 장학생의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별, 학년 별 재학생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2023. 4. 1)

제15조 (삭제 2023. 4. 1)

제16조 (장학금의 지급) ① 모든 장학금은 총장의 증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2.13)

②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장학금의 지급제한

제17조 (장학금의 수혜기간) ① 수혜기간은 1개 학기 단위로 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2년제 학부(과)는 4개 학기, 3년제 학부(과)는 6개 학기 수혜 가능하다. 단, 근로 장학금은 학기 수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하다. (개정 2024. 4. 1)

③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수혜요건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7. 1]

제18조 (장학금 수혜자 선정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장학금 수혜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2. (삭제 2023. 4. 1)
3. (삭제 2023. 4. 1)

4.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의 수업연한 초과자 (신설 2024. 4. 1)

제19조 (삭제 2013. 4. 1)

제20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제한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적 및 휴학자
3.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규정 위반 자

제21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8조 및 제19조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차 순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22조 (금지행위)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학관계 서류의 허위기재
2. 교외장학금을 받는 자로서 관계 구비서류 제출을 태만히 하는 행위
3.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4. 기타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

제23조 (장학금의 총액제한)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인이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수혜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2. 대가성 장학금 :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글로벌인재장학금, 대가성의 교외장학금 등 (개정 2024. 4. 1)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장학금

[본조신설 2013. 4. 1, 전문개정 2022. 7.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